##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2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5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이기헌 • 박홍배

김문수 · 황명선 · 안호영

정동영 · 강준현 · 박민규

민형배 · 허종식 · 박희승

김윤덕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국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,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 설 건립 등의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, 동학농민혁 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유재산에 대한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되 기념공원 내 주요 건축물(기념관, 교육관 등)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.

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·운영 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 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5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항 전단 중 "공유재산(토지에 한정한다)"을 "공유재산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9조(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) ①	제9조(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) ①	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	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	⑤	
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		
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		
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		
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		
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<u>공</u>	<u>구</u>	
<u>유재산(토지에 한정한다)</u> 을 무	<u>유재산</u>	
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 이 경		
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		
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		
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		
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.	<u>.</u>	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	